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시 정 요 구

제 목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추정 소홀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북구, 광산구

내 용

지방세 과세권자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sup>46)</sup>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46)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

또한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세권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관내 부동산 등을 소유한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 지분변동 내역 등을 확인하여 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법인장부가액)에 대하여 과점주주 지분율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산구에서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과세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6건, 27,042,590원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았다.

####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광산구청장은**

[시정] 과점주주에 대한 부과 누락한 취득세 6건, 27,042천원을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